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은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1.
발의자 : 최은석 · 김선교 · 이종배
구자근 · 김승수 · 이종욱
유상범 · 김은혜 · 추경호
한지아 · 김상훈 · 박수영
김기웅 · 김장겸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,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 · 배당소득 비과세,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한편,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.5%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, 농업 고령화율은 55.8%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.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, 농업인 자산형성,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

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1항).
- 나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· 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).
- 다. 농업용 · 축산업용 ·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05조제1항).
- 라.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·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06조제2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0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0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o]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